

일시 : 2018.05.09.(수) 16:00
장소 : 성북구청 11층 협업카페

- 2018년 05월 (제45차)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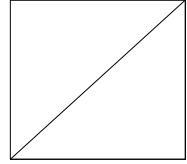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논의사항	성북구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및 권고안 논의	별첨
2	심의사항	인권영향평가 심의 안건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
3	보고사항	주민참여예산위원 인권교육	45
4	보고사항	공공건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성북구 삼척수련원 신축설계〉	48
5	보고사항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	50

【공개】

성 북 구
인권위원회



의안번호	
보 고 연 월 일	2018. 5. 9.(수)

심 의 사 향

인 권 영 향 평 가 심 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보고자 | 성북구 감사담당관(인권센터)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범위 및 대상 구체화 (안 제5조)
- 나. “구청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 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조항 신설 (안 제5조의3~안 제5조의6)
- 라. “알선·청탁 등의 금지” 범위 및 대상 구체화 (안 제14조)
- 마.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분야 범위에 “가상통화” 추가 (안 제15조)
- 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 (안 제17조 별표1)
- 사.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안 제18조 별표2)
- 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거래 제한 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직무관련자와 제한되는 사적접촉 유형 규정 신설,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의 방법 규정 신설 (안 제20조)
- 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8587호)
 -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한다.
제5조의 조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를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제1항제2호 중 “4촌”을 “공무원의 4촌”으로,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신”을 “공무원 자신”으로,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를 “법인·단체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

는 행위

2. 자신이 구의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구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구, 구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의 가족이 구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구, 구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

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자업자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구, 구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구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무원의”를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을 “부동산, 가상통화”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조제목 “(금전의 차용 금지 등)”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

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2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한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구청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구청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공무원 외부강의등 대가 지급기준(제18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의견	
----	--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8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u>단체</u>를 말한다.</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단체</u></p> <p>1)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가목</p> <p>2)·3) (생략)</p> <p>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u>단체</u></p>	<p>제2조(정의) ----- -----.</p> <p>1. ----- ----- ----- ----- ----- ----- ----- <u>법인·단체</u>-----.</p> <p>가. ----- ----- ----- ----- <u>법인·단체</u> <u>체</u></p> <p>1)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가목1)에 <u>따른 법정민원</u></p> <p>2)·3) (현행과 같음)</p> <p>나. ----- ----- ----- ----- <u>법인·단체</u></p>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 -----

----- 법인·단체

라. -----

----- 법인·단체

마. -----
----- 법인·단체

바. -----

----- 법인·단체

사. -----

----- 법인·단체

아. -----

----- 법인·단체

자. -----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3. (생략)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
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
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
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
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
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법인·단체

2.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5
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

-----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
를 수행하는 -----
-----.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
----- 말한다.-

3. 공무원 자신-----
- 법인·단체가 -----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신 설>

<신 설>

4.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 11.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

<신 설>

<신 설>

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신 설>

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
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
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
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구의 쟁송 등의 당사
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구에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인 경우에 구의 상대방을 대리
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
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
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

<신 설>

<신 설>

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구, 구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의 가족이 구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구, 구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

<신 설>

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자업자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구, 구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구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
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
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
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
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
다.

<신 설>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공직
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 해치는 --.

② -----

----- 공직자-----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

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적용대상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 있는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2. ~ 7. (생략)

<신 설>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부동산, 가상통화 -----

2. ~ 7.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

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과 제1항 각 호의

무원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
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
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
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
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
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
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p>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p>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p> <p>2. ~ 4. (생략)</p> <p>제26조(교육 및 포상)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u>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u></p> <p>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 ----- ----- ----- ----- ----- -----</p> <p>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26조(교육 및 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	--

- 2017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 해당 조례 정비
-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회에 대해 규정한 사항 반영 등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 <u>규칙명</u>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계획 방침서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8. 4.18.부터 2018. 5. 8.까지(21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8.05월 중	
	의회상정	-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안)	
	기타자료	근거법령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감사담당관	6	조연희	2241-217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8-9	
조례·규칙명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 검 표 작 성	1.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 여	5.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단 수	7.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 여	8.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9.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8. 5. 9.)

조례 및 규칙명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권교육 결과 보고

I 교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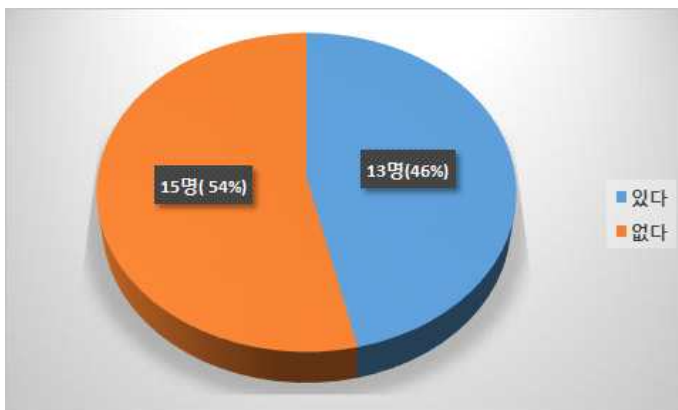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8. 4. 4.(수) 19시 ~ 21시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수 료 자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9명(전체 43명 중 67%)
- 교육내용

강 사	내 용	강 사 프 로 필
염형국	-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 장애인 인권과 공공성의 관계 - 장애인 피해 사례로 보는 국가의 역할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현) - 2004.0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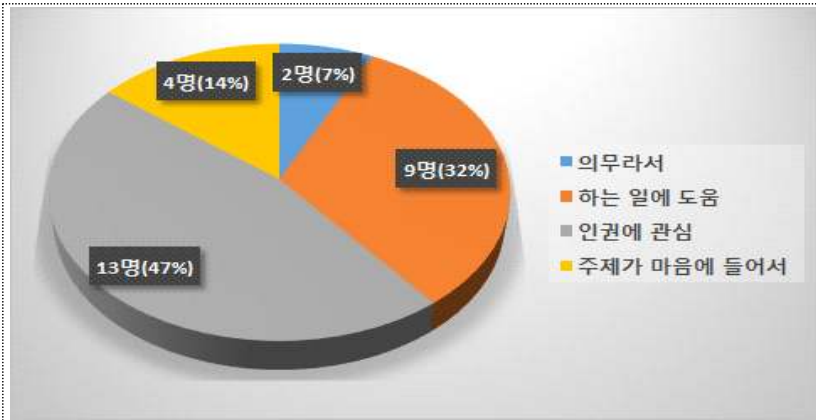
II 설문 평가

- 응답자 : 수료생 29명 중 28명(97%)
-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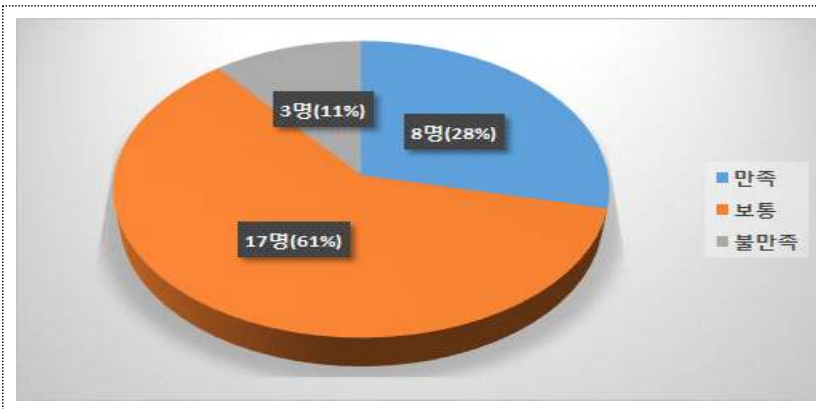
1. 이번 강좌 이전에 인권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2. 인권교육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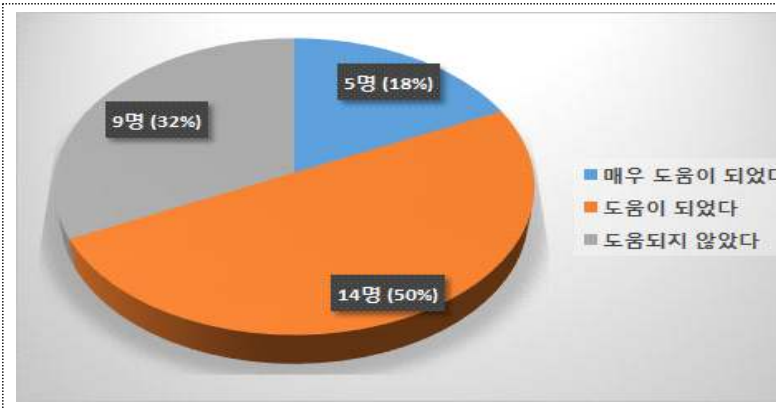
3. 강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4. 강의 전반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개선할 점을 적어주십시오.



5. 이번 강의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 하는데 도움 될 것 같으십니까?



기타 의견

- 참여예산과 인권과의 연관성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교육하였으면 하는 아쉬움
-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 일방적 강의식 교육으로 집중도가 떨어졌으며 테이블이 필요함
- 장애인 인권과 공공성이라는 주제에 비해 내용 전달이 불명확
- 공공성의 개념을 알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 공공성에 있어 장애인 인권을 넘어 소외계층 전반을 다룰 필요가 있음
- 강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충실한 설명을 하였고 도움이 되었음
- 사회적으로 알지 못했던 부분에 정보를 얻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대상인 만큼 특화된 내용이 필요

III 총 평

- 인권교육 참여 경험 유무가 반반으로 교육 수준 및 정도를 맞추기가 어려웠음
 - 참여 유경험자의 경우 개념 중심의 설명이 다소 지루하게 느낌
- 주민참여예산 기본/심화과정 이수 이후 진행된 교육으로 앞선 교육과의 연속선상에서 활동 시 고려해야 할 인권 사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 활용예로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대상의 성격과 참여 인식 수준에 맞는 촘촘한 교육설계가 필요
 - 소외계층 전반과 공공성에 대한 기본개념, 인식 필요성들은 기본교육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구체적 적용례 등 사례 토의를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

- 공공건축 인권영향평가 - 〈삼척수련원 신축설계〉 실시 결과보고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4. 17.(화) 16:00 ~ 17:00
- 장 소 : 성북구청 미래기획실
- 참석자 : 11명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 이성석, 이윤하, 인권센터장
 - 성북구 : 건축과 공공건축팀장, 건축과 담당 주무관, 행정지원과 후생지원팀장,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관, 인권센터 담당 주무관
 - 시공 건축사사무소(도시건축집단) : 이현식, 권용규 소장 외 1인

2 공 사 개 요

- 사업명 : 『성북구 삼척수련원 신축공사』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66-7 외3필지
- 규 모 : 지상3층 이하, 연면적 1,100㎡
-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수원)



3

회의결과

□ 인권영향평가 의견

	항 목	설계안	평가 의견
인권 관련	야외공간 조성	주차장 24대, 야외화장실, 탈의 및 샤워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주차 상황 고려하여 주차면수 증대 검토 • 실외 화장실, 샤워실의 단열 및 냉난방과 교통약자의 이용권 고려 • 야외산책로, 내외부공간의 연결부분에서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행권 고려 (단차, 재료 등 고려)
	화장실	공동화장실 변기대수 유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동 1층 공동화장실의 남,여 변기수 조정 혹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개수 증대 • 장애인 화장실칸 접근성 고려하여 위치 선정(맨 앞 칸) • 객실화장실 휠체어 회전각, 거울경사, 세면대 높이 등 고려
	통합형 객실	베리어프리형객실, 일반형 객실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적 용어(베리어프리형, 일반형으로 분리하는 용어) 사용 지양 • 베리어프리형/일반형으로 객실을 분리하는 대신 전 객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객실로 설계하는 방안 고려 • 현관과 객실 사이 마감차에 의해 생기는 턱을 극복할 수 있는 디테일 검토 요청(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침대 공간까지의 접근 동선 고려)
	경사로 설치	경사로 없이 엘리베이터/계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 및 화재 대피 시 접근권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계단 대응 경사로 1개 곳 설치
	직원 휴게실	현재 설계(안)에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실 공간 등의 조정을 통해 청소 및 시설관리직원의 탈의, 휴게실의 공간 확보
기타	다목적실(1층 강당)이 유명무실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간의 성격 명확히 할 것		
	추가 부대 설비 검토(자전거 거치대, 탈의실 앞 에어샤워기 등)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 사회적가치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사례

□ 심사개요

- 기 간 : 2018. 4. 24 ~ 4. 29 (6일간)
- 대 상 :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38개 우수사례
- 심사방법 : 정부혁신국민포럼 홈페이지(www.innogov.kr/vote)를 활용, 지역주민, 일반국민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투표

□ 심사결과

○ 경진대회 발표 우수사례 10개

구 분	선정 우수사례	
인 권	▶ 경기 가평(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 전북 진안(주민주도 장애인 복지)
사회통합	▶ 경기 여주(다문화가정 공감지원 정책)	▶ 부산 사상(지역연대 다복따복망 구축)
공 동 체	▶ 경기 시흥(마을공동체 동네관리소)	▶ 전남 본청(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상생협력	▶ 대구 본청(Start-up 생태계 구축)	▶ 제주 본청(골목상권 자체브랜드 개발)
시민참여	▶ 경기 성남(시민건강닥터 제도)	▶ 전북 완주(청년완주 JUMP프로젝트)

○ 경진대회 시상 우수사례(장려) 28개

구 분	선정 우수사례	
인 권	▶ 서울 본청(철거현장 안전지킴이단) ▶ 경기 안성(집배시스템 협력 희망엽서)	▶ 서울 성북(인권영향평가 제도화) ▶ 제주 제주(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사회통합	▶ 경기 고양(고양시 꿈의 버스) ▶ 서울 성북(마을돌봄 프로젝트) ▶ 광주 남구(We 편한세상 만들기)	▶ 경기 안양(맞춤형 안전시스템) ▶ 서울 구로(발달장애인 복합문화체육센터)
공 동 체	▶ 전북 완주(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 서울 광진(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용) ▶ 경남 거제(나다운 시민의식 선진화) ▶ 강원 태백(황부자며느리 이야기 타운)	▶ 전북 김제(독거어르신 복지 패트롤) ▶ 경북 예천(신품미술관 할머니 그림학교) ▶ 충남 논산(등고동락 행복공동체 조성)
상생협력	▶ 서울 강동(엔젤공방거리 조성사업) ▶ 서울 성북(同幸 공동체) ▶ 인천 남동(모두가 행복한 남동)	▶ 서울 성동(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 부산 본청(부산경제 HaHa 프로젝트) ▶ 울산 본청(청년의 내일이 있는 희망울산)
시민참여	▶ 충북 옥천(치매 안심되는 옥천만들기) ▶ 서울 은평(생활민주주의 모델 정립) ▶ 대전 동구(동구발 함께하는 평생학습)	▶ 경기 시흥(주민참여 민노사정협의체) ▶ 전남 순천(순천시 정책참여 플랫폼) ▶ 세종 본청(모바일 정책투표, 세종의 뜻)

□ **향후계획**

- '18. 5.10. 14:00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38개 시상

❖ 제46차 인권위원회 정례회의 일정

- 일 시 : 2018년 7월 11일(수) 16:00
- 장 소 : 성북구청 11층 회의실